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8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박명재

◎대통령령 제20218호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2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7호 및 제28호 중 “제1호 내지 제26호의4”를 각각 “제1호부터 제26호의5까지”로 한다.

26의5. 대부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11인”을 “1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8인(4급 1인, 5급 4인, 6급 3인)”을 “11인(4급 1인, 5급 8인, 6급 2인)”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80”을 “8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6”을 “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2”를 “7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들의 사금융(私金融) 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의 감독업무를 담당할 인력 1인(5급 1)을 증원하고, 금융의 복잡화·전문화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조정(5급 +4, 6급 -1)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8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박명재

◎대통령령 제20219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전단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3(100분의 3으로 산정한 사업자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6개로 한다)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⑥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추천 및 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추천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추천서를 교부한 후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방송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최대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가.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2. 최대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방송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최대액출자자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최대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및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방송사업구역과 관련된 분쟁 조정
3.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4.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②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률, 행정, 경영, 회계,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 각 방송시간”을 “방송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데이터방송프로그램 방송내용물”을 “방송내용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을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을 각각 “방송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데이터방송프로그램 방송내용물”을 “방송내용물”로 한다. 제5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제51조제1항 중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8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초과(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이 30개 이하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00분의 5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한한다)”를 “100분의 50을 초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교육, 종교 또는 지역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및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되는 채널은 제외한다)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해당 채널
- (2)동일인이 운용하는 채널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채널
- (3)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
- (4)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매년 11월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의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채널의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2. 해당 채널의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3. 해당 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4.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5. 시청자불만 및 민원의 처리 현황

④제3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공익채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을 각각 “방송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을 “방송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을 “방송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체 영화”를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광고”를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회”를 “1회 이내”로, “2회”를 “2회 이내”로, “3회”를 “3회 이내”로,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이내”를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로 한다.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당해 시간의 전체 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송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제61조의2 및 제6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 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66조의2 (제재조치 등)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란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각 해당 조의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10만원
------------------------	------

별표 4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별표 제4호,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별표 제27호 중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를 각각 “제100조제4항을”로 한다.

2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2	500
4.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가. 법 제6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00
나. 법 제6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시청시간대에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중하여 편성한 자		300
다.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4호	300
라. 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 이외의 방송프로그램을 부수적으로 편성한 자		500
마. 법 제69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한 자		1,500

10. 법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가.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1,000
나.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다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08조제1항제10호	1,000
다. 제59조제1항제1호나목을 위반하여 중간광고를 한 자		1,000
라.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업적공익광고를 편성한 자		500
마. 법 제7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의 방송광고를 한 자		500
11.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000
가.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11호	1,000
나.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700
26의2. 법 제100조제2항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26호의2	1,000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의 공익채널은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5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성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제4조제3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임대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3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70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약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거나 재승인을 얻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4.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5.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6.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7. 법 제8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방송사업자(방송 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약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8.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9.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10.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1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100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1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100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13.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방송사업자 상호간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 및 자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 제한(영 제4조제3항제1호 신설 및 제2호)

- (1)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상호 경영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함에 따라 상호 경영이 제한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위성방송사업자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함.
- (3)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과 재원(영 제13조의2 신설)

- (1)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방송의 편성과 재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운영자금은 기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
- (3)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영 제15조의2 신설)

- (1)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 따라 승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는 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21조의3 신설)

- (1)방송에 관한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기준(영 제50조제5항 신설)

- (1)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공공채널 등 일부채널을 제외하고는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과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함.
- (3)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을 제한함으로써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프로그램 편성(영 제52조의2 신설)

- (1)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편성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도록 함.
- (3)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청취자의 방송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채널 임대 제한(영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 (1)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을 임대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임대하게 됨에 따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채널 임대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2)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수의 합계가 그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그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3)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채널을 임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영 제59조제1항 신설)

- (1)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방송광고는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는 화면 좌측 또는 우측의 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도록 함.

(3)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광고방송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영 제59조제4항 신설)

(1)방송사업자 등이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와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를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함.

(3)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